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민원사무처리	3
위생민원	3
공중위생영업	3
이·미용사 면허신청	4
식품영업	4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변경에한함)	4
허가사항 변경신고	5
등록사항 변경등록	5
등록사항 변경신고	5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6
기타변경(영업소 소재 변경외)	6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6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6
조리사 면허 발급 및 재교부 신청	7

민원사무처리

민원서식


위생민원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영업 민원처리사무입니다.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을 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영업신고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 1부 ▪ 면허증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 ▪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영업신고 사항변경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지위승계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필증 1부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폐업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신고증 	신고서작성→접수→서류 검토→결재→통보
재교부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분실사유서 작성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신청서작성→접수→서류 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이·미용사 면허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중 1부 미용사 면허 발급용 의사진단서 1부(최근6개월 이내의 것) 전문의 진단서 1부 (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3.5cm 세로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식품영업

구분	근거법령	업종	구비서류
영업허가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접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 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소방서발급)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결격사유조회 → 결재 → 영업허가증 교부			
영업허가사항변경신청 (3일/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접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p>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변경에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 허가증 1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사용 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http://www.gangjin.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p>허가사항 변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증 1부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결재 → 영업허가증 교부			
영업등록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 수수료증 1부 ■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결재 → 영업등록증 교부			
영업등록사항변 경신고 (3일/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p>등록사항 변경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영업소의소재지, 추가 시설을 갖추어서 새로운 식품군 추가 ■ 영업 등록증 1부,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p>등록사항 변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영업소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위생교육 수수료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결재 → 영업등록증 교부			
영업신고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 수수료증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완성검사필증 (LPG사용하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중 영업소 면적 지하 66㎡이상, 2층이상 100㎡이상인 업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영업신고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수료증 1부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영업신고 사항변경 (즉시~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접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p>영업소의 소재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이상에 위치하며 100㎡이상인 업소) <p>기타변경(영업소 소재 변경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p>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영업신고증 ·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 ·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p>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p>식품영업자지위 승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 3일 ▪ 영업등록: 3일 ▪ 영업신고: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 건강진단결과서(양수인)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해당)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p>폐업신고 (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을 동시 폐업 할 경우 ▪ 사업자 등록증 1부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결재 → 영업허가증 교부			
<p>재발급 (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교부			
<p>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9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필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조리사 면허 발급 및 재교부 신청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제81조제1항

(<http://www.gangjin.go.kr>)

- 면허신청

- 조리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5일소요)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 재교부

- 면허증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